
2024학년도 전 · 편입학 관리규정



-
1. 모집학과 및 인원
 2. 지원자격
 3. 제출서류
 4. 전형절차 및 방법
 5. 전 · 편입학전형위원회
 6. 학년결정 입학
 7.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 안내
 8. 기타 유의 사항
-

1 모집 학과 및 인원

가. 모집 학과 및 인원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결원자의 해당학과 전형유형별로 전·편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

나. 모집 구분

정원내 일반전형 및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보훈자자녀전형 및 고입특례대상자전형을 구분하여 해당자를 모집한다.

※ 사회통합전형은 순위에 따른 단계별 전형 실시

※ '정원 외' 보훈자자녀전형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교육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하며,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기타 국가보훈대상자는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에 지원해야 함

2 지원 자격

가. 공통자격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 또는 외국어고등학교가 없는 지역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
- 2)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수학한 해외귀국 학생으로서 원서 접수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계열을 달리하는 전입학은 2학년 1학기, 동일 계열 전입학은 3학년 1학기까지 허용한다.

※ 위 '2)'항의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뜻한다.

나. 전형유형별 세부 지원 자격(가항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해당 지원 전형별 자격을 갖춘 자)

전형 구분		유형별 지원 자격	
정원내	일반전형	공통자격을 갖춘 자	
	사회통합전형	기회균등전형	<p>60% 우선 선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또는 11호에 근거하여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4)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5)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자 6)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및 60% 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갑작스런 사유로 기준 중위소득 50~60% 이하 수준으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포함 <p>※ 학교운영위원회 별도 심의 및 회의록 제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대상자로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자)

	사회 다양성 전형	1 순 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제14조의 2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3) 지원 당시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4)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거주자로서 해당 지역 중학교 졸업(예정)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이외 소년·소녀가장 또는 조손가족의 자녀 6)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 7) 순직군경, 순직소방관, 순직교원, 순직공무원의 자녀
		2 순 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제5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의 경우 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 2)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족의 자녀(자녀 모두 지원 가능) 3) 15년 이상 재직 중인 중령 이하 군인 자녀 4) 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감 이하 경찰(해양경찰) 자녀 5) 15년 이상 재직 중인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자녀 6) 시·도 또는 군·구 소속으로 재직 중인 환경미화원의 자녀
정 원 외	보훈자자녀 전형	○ 국가보훈부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	학비 면제 대상
	고입특례 대상자전형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각목 및 제3호에 의거 『서울특별시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되어 통보된 자	
	외국인전형	○ 부모와 본인이 모두 외국인으로 한국어 수업이 가능한 자	

※ 사회다양성전형은 2023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 자격 부여

◆ 참고 사항

1. 사회통합전형 중 『기회균등전형』

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1)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가 매우 곤란한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 2)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
 - 3)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
 - 4)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에 따른 생계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
 - 5) 「아동복지법」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 학교운영위원회 별도 심의 및 회의록 제출

나.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로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는 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

「국가보훈기본법」제3조 제2호에 해당되는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18호 및 제73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제4호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 제3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7조제9항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 제3호

※ 교육지원대상자는 '정원 외 보훈자 자녀 전형'으로 별도 지원

2. 사회통합전형 중 『사회다양성전형』

○ 필수 요건 : 2023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자녀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납부 금액이 아래 기준표 해당 금액 이하인 가구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과세금액은 부·모(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경우 친부 및 친모) 모두 확인·합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서 제출 기준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함 (재산세(전국단위 주택분) 과세내역 확인 불필요) 2) 직장가입자 및 혼합가입자(직장 + 지역):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서 제출 기준 최근 6개월 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금액)과 재산세(전국단위 주택분) 과세금액(연간)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 가구원수·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①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외)조부, (외)조모 제외]
 - ※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 기혼인 형제·자매의 경우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포함 (최소 원서 접수 6개월전부터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않은 경우 미포함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친부 또는 친모)를 포함하여 가구원 수 산정

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경우 친부와 친모 건강보험료 합산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 확인·합산

③ 건강보험료 산정 및 적용방법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연말정산금액 (분할)납부청구액은 제외)
 - 소득이 없는 달(한시적으로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은 기간에 산정하지 않음
 - 휴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시 휴직 전 납부된 건강보험료로 산정
 - ※ 입학 지원서 제출 당시 복직한 경우 복직 후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산정
- (적용)
 - ※ 부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과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사례)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4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2천원 납부하는 4인가구의 경우: 4만원(부)+2만2천원(모)⇒가구 건강보험료 (혼합 6만2천원)

[표] 2023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재산세(주택) 과세금액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재산세(주택) 과세금액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혼합가입자 (직장+지역)	
2인	157,523	197,299	200,343	697,200
3인	229,312	255,791	261,015	1,073,040
4인	293,801	309,670	320,126	1,444,080
5인	354,030	359,887	379,133	1,801,200
6인	436,179	434,962	476,875	2,145,600
7인	481,248	476,875	521,613	2,483,520
8인	527,523	521,613	563,270	2,821,200
9인	570,140	563,270	625,329	3,158,880
10인	628,210	625,329	729,187	3,496,560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연말정산금액 (분할)납부청구액은 합산에서 제외
- * 재산세(전국단위 주택분)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재산세 주택 과세 합산금액임
- * 재산세(전국단위 주택분)는 전국에 소유한 모든 주택(아파트)에 대한 과세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토지, 상가 등에 대한 재산세는 미포함
- * 혼합가입자(직장+지역): 부 또는 모 중 1명은 직장가입자이며, 1명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 합산

4. 특례대상자

- 정원 외 모집 대상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 해당자

구 분	자 격 요 건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 가목)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 학하여 졸업한 자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 (제2호 다목)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
북한이탈주민 등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하여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 2024학년도 귀국자 전편입 시행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제출 서류

가. 공통 제출 서류

- 1) 전·편입학 원서 및 수험표
- 2) 자기소개서
- 3)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4) 주민등록등본(단, 일반전형 지원자 중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자는 제외)

나. 국내 고등학교 재학생

- 1) 중학교 생활기록부 1부(고등학교 4개 학기 영어성적 제출자는 제외) - 학교장 직인 날인 및 간인 처리, 단면 출력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원본 대조필)과 성적 증명서[해당 지역교육청 중등교육지원과장 또는 담당 장학사 날인] 각 1부
- 2)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1부 - 학교장 직인 날인 및 간인 처리, 단면 출력

다. 해외 귀국 학생

- 1) 외국학교 전(全)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
- 2) 국내 최종학교 재학(또는 제적, 졸업)증명서 1부
- 3) 출입국사실 증명서 1부(고입특례입학대상자전형 지원자는 부·모 포함)
- 4) 재외국민등록부 등본(고입특례입학대상자전형 지원자 해당) 1부
- 5) 국내 최종학교 생활기록부(해외 수학기간이 4학기 미만인 경우) 1부

※ 해외 귀국학생 서류

-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본교에서 원본대조필한 후 사본 제출 가능
- 아포스티유 가입국의 국공립학교는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제출
-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
-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 후 공증하여 제출

라. 사회통합 전형

대 상		제 출 서 류		발급처	
사회통합 전형	사회통합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본교 소정양식)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족은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한부모가족은 '자녀(지원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증명서 또는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를 단독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에서도 발급 가능) 		구청, 주민센터, 학교, 정부24(홈페이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센터, 정부24(홈페이지), 복지로(홈페이지)	
	법정차상위 대상자	차상위 자활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급여대상자 확인서 		주민센터, 복지로(홈페이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공단(홈페이지)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주민센터, 복지로(홈페이지)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연금대상자 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계층 확인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증명서		구청, 주민센터, 학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교육비지원 확인서		학교	
사회통합 전형	기 회 관 등 전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 추천서(본교 소정양식)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회의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추천위원회 의견서 포함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원서 제출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모두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세 과세 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 주택분)'으로 발급받아 제출(동 주민센터 방문 발급, 온라인 발급 불가) - 과세 사실이 없는 경우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제출(전국단위 주택분 발급) - 주택이 있는 지역의 과세증명서와 주택 미소유지역에 대한 '과세 사실이 없음'이 명시된 과세증명서를 각각 발급 받아 모두 제출 			구청, 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형편이 곤란함을 증빙하는 기타 제반 서류 [원본대조필: 해당 중학교 교감날인(졸업예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빙서류의 예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산세 과세 증명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 ○ 아동복지시설 재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해당서류 발급기관

대 상		제 출 서 류		발급처	
사 회 다 양 성 전 형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할 보훈지청, 정부24(홈페이지)	
	사회다양성 공통 (부·모 모두 제출)	지역 건강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원서 제출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건강보험자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 보험공단지사, 공단(홈페이지)	
		직장 건강보험료, 혼합(지역+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원서 제출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건강보험자자격득실 확인서 재산세 과세 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 주택분)'로 발급받아 제출(동주민센터 방문 발급, 온라인 발급 불가) - 과세 사실이 없는 경우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제출(전국단위 주택분 발급) - 주택이 있는 지역의 과세증명서와 주택 미소유지역에 대한 '과세 사실이 없음'이 명시된 과세증명서를 각각 발급 받아 모두 제출 		구청,주민센터
	다문화가정의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 또는 모가 귀화한 경우 귀화인의 기본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가 외국 국적자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사본 		해당서류 발급기관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특수교육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통지서 사본(원본대조필) 		
	도시·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졸업(예정)증명서(졸업자)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실 관계 확인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원본대조필) 		
	순직군경·소방관·교원·공무원의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직군경·순직교원·순직교원·순직공무원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한부모가족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자녀'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 주택분)를 친부·친모 모두 제출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 서류 필요 없음 ※ 공통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확인함 		
	환경미화원 자녀 (사도 또는 군구 소속 환경미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직증명서 		
	군인 자녀(준·부사관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년 이상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경찰 자녀(경위 이하)					
소방공무원 자녀(지방소방위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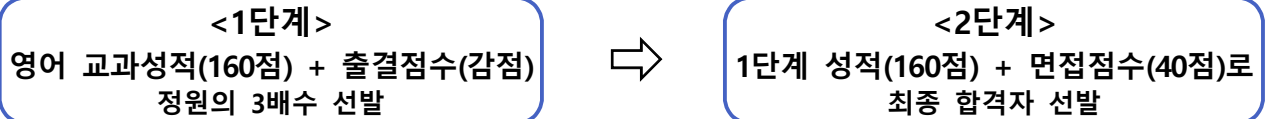
마. 정원외 전형

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보훈자자녀전형 (정원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학년도 고입 (사회통합 · 보훈자 자녀 · 특례대상자)전형 학교장 확인서(본교 소정양식) ○ 2024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본교 소정양식) 	관할 보훈지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대상자 통보 이후 지정된 경우에만 제출 ※ 국가보훈부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하여 통보된 자는 제출 불필요 (중학교 확인 필요) 	
고입특례대상자전형 (정원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학년도 고입 (사회통합 · 보훈자 자녀 · 특례대상자)전형 학교장 확인서(본교 소정양식) ○ 2024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본교 소정양식) ○ 다른 시·도 출신자 : 고입특례대상자 확인서(해당 중학교 발급) 	
외국인전형 (정원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각 1부(부모 포함) ○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 성적증명서 ※ 국내 거주자가 아닐 경우 : VISA 발급 후 입학 	

- ※ 모든 제출서류는 단면인쇄를 하고, 클립이나 집게를 이용하여 묶어서 제출함(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제외)
- ※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 ※ 제출된 증빙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원본을 보관해야 할 서류는 '원본대조필'을 한 사본 제출

4 전형 절차 및 방법

가. 자기주도학습전형 절차



1) 1단계 : '영어 교과 성적(160점) + 출결점수(감점)'로 정원의 3배수 선발

가) 영어 교과성적 산출 방식

영어 교과 성적 (160점 만점)
= 공고일 기준 최근 4개 학기 영어 교과성적 성취도별 부여점수의 합

[표1] 성적 산출 기준표

성취도	A	B	C	D	E
점수	40점	36점	32점	28점	24점

※ 자유학기제가 포함된 학기의 경우, 성적 산출시 자유학기제 미운영 학기의 성적으로 대체함
(예: 2학년 1학기에서 자유학기제를 이수한 경우 2학년 1학기 성적을 2학년 2학기 성적으로 대체)

※ 동점자 발생 시 4학기 국어, 4학기 사회, 3학기 국어, 3학기 사회, 2학기 국어, 2학기 사회, 1학기 국어, 1학기 사회의 순서로 성취도를 반영하여 선발 (사회 과목이 없는 학기의 경우 역사 과목으로 대체)

※ 1단계 최종 동점자는 전원 2단계 전형 대상으로 선발함

나) 교과성적 산출 관련 유의사항

(1) 영어 교과성적 산출 유의사항

- ① 조기진급·조기졸업(예정)자의 교과성적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최종학년(조기이수 프로그램에 의한 이수학년 제외)성적을 반영하되, 조기진급자는 3학년 영어 교과성적 100%의 비율을 적용·산출하고, 조기졸업(예정)자는 2학년 영어 교과성적 100%의 비율을 적용·산출함
- ② 영어 교과성적이 부분적으로 없는 학생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관리 규정에 따라 학년별로 최인접 성적을 반영함(단, 한 학년의 1,2학기 성적이 모두 없는 경우 인접학년 최인접 성적으로 반영함)

(2) 해외 중학교 출신자 교과성적 산출 방법

- ① 최종 4학기 중 한 학기라도 국내성적이 있으면 국내성적만 반영함
- ② 국내 중학교 2, 3학년 성적이 모두 없는 해외 중학교 졸업자 : 해외 최종 4학기 영어성적을 성취도(A, B,...)로 점수를 부여함
- ③ 동점자 발생 시, 국어·사회 교과 대신 영어·사회 관련 교과(social studies, geography 등)를 반영함
 ※ 사회 관련 교과가 없는 경우 역사 관련 교과(history 등)를 반영하며, 역사 관련 교과가 없는 경우 외국어 관련 교과(spanish 등)를 반영함

[동점자 처리 기준]

3학년 2학기 영어 → 3학년 2학기 사회(역사/외국어) → 3학년 1학기 영어 → 3학년 1학기 사회(역사/외국어) → 2학년 2학기 영어 → 2학년 2학기 사회(역사/외국어) → 2학년 1학기 영어 → 2학년 1학기 사회(역사/외국어) 순으로 반영

④ 해외 중학교 출신자 서류 관련 사항

-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본교에서 원본대조필한 후 사본 제출 가능함(원본대조 확인자 서명 날인)
- 아포스티유 가입국의 국공립학교는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제출함
-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함
- 모든 서류는 한글로 번역 후 공증하여 제출함

(3)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교과성적 산출 방법

- ①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영어, 국어, 사회 과목의 원점수를 아래의 환산표에 의해 성취도를 반영함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원점수 환산 성취도]

원점수	90이상	90미만~80이상	80미만~70이상	70미만~60이상	60점미만
성취도	A	B	C	D	E

※ [변경예고] 2025학년도 환산 성취도는 변경될 수 있음(추후 공지 예정)

다) 출결점수 산출 방식

$$\text{출결점수} = - (4\text{개 학기 미인정 결석 일수} \times 1\text{점})$$

- (1)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는 종류를 불문하고 3회 당 미인정 결석 1일로 간주하여 감점하며, 나머지 2회 이하는 감점하지 아니함
- (2) 출결점수 최대 감점은 10점으로 함
- (3) 출결점수가 없는 자의 출결점수 산출: 환산된 4학기 영어 과목 성취도를 반영

성취도	A	B	C	D	E
출결점수	0점	-1점	-2점	-3점	-4점

- 2) 2단계 : '1단계 성적(160점) + 면접점수(40점)'로 선발
 ※ 자기주도학습전형의 면접점수 산출 방식

면접점수 = 자기주도학습영역(꿈과 끼 영역) 점수(30점) + 인성영역 점수(10점)
--

나. 전형단계 영역별 배점

1단계					2단계	총 점
2-1학기	2-2학기	3-1학기	3-2학기	출결	면접	
40점	40점	40점	40점	감점	40점	200점

다. 면접 영역별 평가 요소 및 배점

영역별 평가요소	평가 내용	배점	관련 서류
자기주도학습 영역 - 꿈과 끼 영역 (30점)	■ 자기주도학습과정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 설정·계획·학습 그리고 그 결과 평가까지의 전 과정(교육과정에서 진로체험 및 동아리 활동,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및 경험 등 포함)	20점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Ⅱ)
	■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학교 특성과 연계해 본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과 진로 계획	10점	
인성 영역 (10점)	■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핵심인성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및 중학교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 핵심인성요소 > 봉사·체험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존중, 규칙준수 등 학생의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의미 </div>	10점	

- ※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함
- ※ 외국인의 경우 면접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실시하되, 전·편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면접 방법과 내용을 달리할 수 있음

※ 면접에 참여한 수험생은 면접 후 한국교육개발원(<http://www.kedi.re.kr>)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영향평가(온라인 설문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함

라.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 1) 학생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원서접수 사이트에 입력하고 저장함 (최종 저장본이 자동 제출됨)
 - 2)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통해 표절, 대필 등이 확인될 경우 감점 처리함
 - 3) 대리작성, 허위작성 혹은 표절 시에는 사후에도 입학 취소 등 불이익을 부과함
 - 4) 본문에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교과목의 점수나 석차,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기재 시(우회적 또는 간접적 기재 포함) 0점 처리,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지원자 본인의 인적 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등 기재 시 기준에 따라 항목 배점의 10% 이상 감점 처리함
- ※ 인증시험 및 경시대회 입상 증빙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 시 0점 처리하며, 면접 시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점, 심사 제외 및 불합격 처리 등 조치함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사항

- TOEFL · TOEIC · TEPS · TESL · TOSEL · PELT, HSK, JLPT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 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 교과목의 점수나 석차
-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예) 부모 및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듬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및 캠프) 등
-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학교 등 인적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잘못된 자기소개서의 작성 사례

-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TOEIC 시험에 응시해 450점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어공부에 매진한 결과 850점을 얻으며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 영어 성적이 100점이 되어 전교 1등이 되었습니다.
- 중2 겨울방학 중 000에서 주최하는 0000 경시대회에 참가해 2위 입상이라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 어렸을 적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인증시험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전국 단위의 대회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00지검 검사장이신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 00방송반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출신 학교명을 암시하는 경우)

5) 자기소개서 주요 항목

가) 자기주도학습 영역(꿈과 끼 영역)

- (1) 자기주도학습과정: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 설정 · 계획 수립 · 실천 그리고 그 결과 및 평가까지의 전 과정(교육과정에서 진로체험 및 동아리 활동,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및 경험 등 포함)
- (2)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학교특성과 연계해 본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과 진로 계획

나) 인성 영역

- (1) 봉사 · 체험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준수 등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및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등
- (2) 위에 제시된 것 이외에 학생이 발굴하여 작성할 수 있음

5 전 · 편입학전형위원회

가. 구성

위원장 : 학교장

부위원장 : 교감

입학 전형위원 : 교무기획부장, 학생인성안전부장

전형 관리위원 : 입학홍보부장, 교육정보부장, 입학담당관, 전편입학업무담당자

나. 역할

- 1) 전·편입학 전형의 면접위원을 선정한다.
- 2) 전·편입학 전형의 성적 결과 등을 심의하여 합격자 선발, 합격 취소, 추가 합격자 등의 사항을 결정한다.
- 3) 심의 사항은 과반수이상 출석과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 합격자 선발 결정

- 1) 자기주도학습 전형 1단계와 2단계 성적의 합산으로 성적순에 따라 선발한다.
- 2) 합격자가 미등록하였을 경우 그 차하점자를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다.
- 3) 전 · 편입학 시험 이후,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합격점의 차하점의 수험생을 충원할 수 있다.
- 4) 동점자는 면접총점 ⇨ 자기주도학습과정 점수 ⇨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점수 ⇨ 인성영역 점수 ⇨ 영어 교과 성적 총점 ⇨ 최근 영어 교과 성적순으로 사정 선발한다.

라. 합격자 배제 조건

- 1) 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 2) 본교 전·편입학전형위원회에서 본교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자
- 3) 전 · 편입학 이후에도 제출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6 학년결정 입학

가. 법적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 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제98조의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고등학교의 장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제97조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신청인의 학교 외 학습경험에 관한 심의 및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할 하게 할 수 있다.

나. 모집 인원

- 1) 해당학년 모집 정원의 결원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 2) 원적교와 계열이 다르면 2학년 1학기까지, 외국어계열은 3학년 1학기까지 허용한다.

다. 입학 대상

- 1) 학교 외 학습 경험의 1학기 과정은 매년 3월초에서 8월말까지, 9월초에서 익년 2월말까지의 학습 경험으로 한다.

- 2) 고등학교 학력인정 기관[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 산업체부설고(특별학급) 등]에서 1학기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 (단, 2학년 1학기로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1년 이상의 학교 외 학습경험이 있는 자만 허용)
- 3) 국내의 비정규 교육시설(대안학교, 직업훈련원, 대학/지방자치단체 부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내 교육기관, 사내대학,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에서 1학기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

라. 입학 시기 및 자격 요건

1) 신청 시기

- 가) 원서 접수 : 학기 시작 전 10일에서 시작 후 10일내에서 정함
- 나) 서류 심사 및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 : 원서 접수 마감 후 10일 이내

2) 입학 신청 자격 : 전가족이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가) 2학년 1학기로 입학 신청 : 학교 외 학습 경험이 1년 이상인 자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학교 외 학습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 나) 2학년 2학기로 입학 신청 : 학교 외 학습 경험이 1학기 이상인 자로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 고 1학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학교 외 학습 경험이 1학기 이상인 자
 - 고 1학년 1학기 과정을 이수하고 학교 외 학습 경험이 2학기(1년) 이상인 자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학교 외 학습경험이 3학기(1년1학기) 이상인 자
- 다) 3학년 1학기로 입학 신청 : 학교 외 학습 경험이 1학기 이상인 자로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 고 2학년 1학기 과정을 이수하고 학교 외 학습 경험이 1학기 이상인 자
 - 고 1학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학교 외 학습 경험이 2학기(1년) 이상인 자
 - 고 1학년 1학기 과정을 이수하고 학교 외 학습 경험이 3학기(1년1학기) 이상인 자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학교 외 학습경험이 4학기(2년) 이상인 자

마. 입학 전형

- 1)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학교 외 학습경험'을 심의한다(미 통과자에게는 입학 불허를 통보)
- 2)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해 지필평가를 실시한다.
- 3)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지필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입학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바. 제출서류

- 1) 학년결정 입학 신청서
- 2) '학교 외 학습경험' 증빙자료<재학증명서, 이수(수료) 증서 등>
- 3) 최종학교 재학(졸업, 제적)증명서(최종 재학연월일 및 최종 재학학년 명시)
- 4) 전가족 주민등록등본

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1) 구성

- 위원장 : 학교장
- 부위원장 : 교감
- 위 원 : 입학홍보부장, 교무기획부장, 국제교육부장, 교육정보부장
국어과교과과장, 영어과교과과장, 수학과교과과장

2) 역할

학년 결정 해당자의 입학, 조기진급·졸업·진학 등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7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 안내

가. 교육비 지원

1) 지원 근거 : 2023학년도 학비 지원 사업 운영 계획(참여협력담당관-2257, 2023.02.28.)

2) 지원 개요

가) 지원대상 : 교육비지원을 신청한 저소득층 학생(교육청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 반드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함

나) 지원기간 : 교육비 지원 신청한 날이 있는 월부터 ~ 학년도 말까지

다) 지원기준 : 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결과 기준

고입 사회통합전형자 교육비지원 관련 안내	
사회통합전형 시 적용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등의 기준은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과는 별개임.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교육비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3) 지원 내용

가) 학비 및 학교운영지원비

지원기준		지원 범위			비고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전형 무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연 731,000원 이내 지원 (무상교육비대상 학교 평균의 60%)	입학금 및 수업료 교육급여 지급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1/2 교육청 지원	1/2 교육청 지원		입학금 및 수업료 1/2 지자체(구청) 지급
	법정차상위대상자	○	○		
	특수교육대상자 (중위소득60%이하)	○	○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		

○: 교육청 전액지원, △: 일반고 수준으로 교육청에서 지원

나) 수익자부담경비

지원자격	지원 항목	대상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NEIS ⇨ 학생복지 ⇨ 교육비지원 ⇨ '심사관리'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50만원 이내) - 수련활동비(20만원 이내) - 앨범비(전액, 고3졸업예정자) - 기숙사비(순수기숙사비 전액 + 조식식비 전액)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0% 이하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단,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의 경우 일반고와 지원기준 동일

4) 안내 및 유의사항

가) 법정저소득자격 보유자(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는 학기 중 법정저소득자격이 상실되더라도 학년도말까지 지원

나) 교육비 지원 유의사항

- 2024학년도 교육비 지원은 「2024학년도 학비 지원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세부 지원 사항이 결정됨
 ※ 위 지원 사항은 2023학년도 기준이며, 2024학년도 전편입생은 상기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상자는 반드시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비 지원 여부가 결정됨

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사회통합전형 입학자는 다음과 같은 본교의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의거하여 지원할 수 있음

영역	프로그램	세부 내용	운영 계획		
			1학년	2학년	3학년
학업 역량 강화	맞춤형 학습지도(Tutoring)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강좌개설	○	○	○
	동문연계 학습멘토링제	본교 출신 대학생의 학습 및 생활 지도	○	○	
	학습코칭 프로그램	공부 방향 설정 및 계획 수립	○	○	
	대일 학습멘토 위원	재학생 선후배 멘토링을 통해 학습의욕 고취	○	○	
인성 정서 함양	자존감향상 프로그램	Healing Concert 등 실시	○		
	대일 키다리샘 멘토링	개인별 상담활동과 특별지도	○	○	○
	전문상담 프로그램	외부 상담전문가 초빙상담 실시	○	○	○
	예술특별활동	뮤지클래스 운영 및 작곡지도	○	○	
	체육특별활동	Sport Club 및 명상, 요가활동	○	○	
	문화체험 및 현장체험학습	공연, 연극 등 문화체험 기회 제공	○	○	
진로 진학 지도	1:1 진로멘토링	진로진학 자료 제공 및 상담 실시	○	○	○
	Let's Go Together	교장, 교감선생님과의 멘토링	○	○	○
	진로진학 특별강연회	명사초청 강연을 통한 자긍심함양	○	○	○
	동문 직업인 멘토링제	동문 멘토와의 만남과 교류 실시	○	○	
	동문 전공분야 멘토링	대학생 동문을 통해 전공 탐색	○	○	
	진로탐색 독서토론	전공 관련 독서를 통한 진로 개척	○	○	
직접 지원	기회균등전형 지원자 지원	입학전형료 지원	○		
	소규모 테마여행교육	조별활동을 통한 특별체험 실시	○		
	수련활동을 통한 리더십 활동	심신수련 및 협력활동 실시		○	
	학습교구재 구입	신학기에 필요한 교재구입 지원			○
장학 지원	특별장학생제도	학교비에서 마련한 장학금 지급	○	○	○
	교사 및 동문 장학생제도	교사 및 동문회 기금의 장학금 지급	○	○	○
	기타수익자부담경비 지원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에 따름	○	○	○

- ※ 본 프로그램은 현재 진행 중인 본교 1학년(2023학년도 신입) 재학생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 ※ 「2024학년도 서울형 교육복지사업 기본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과 지원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 ※ 직접 지원은 사회통합전형 중 기회균등전형 입학자에게만 지원됨
- ※ 세부 지원 내용은 해당 본인에게만 공지됨

8

기타 유의 사항

- 가. 지원은 학과별로(복수학과 지원 금지) 하며,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음
- 나. 정시 입학전형에 준하여 소정의 응시료를 징수할 수 있음
- 다. 지원자 중 1단계 합격자는 면접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됨
- 라. 불법, 부정행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허위내용 기재,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자는 입학한 후에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함
- 마. 전·편입학원서 등 제출서류에 기재된 개인 정보는 전편입생 입학전형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수집·이용·제공됨(「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안내」참고)
- 바. 전편입학전형에 관련된 개인정보 및 자료는 본교의 입학업무에만 활용되고, 입학사정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본인에게도 공개되지 않음
- 사. 해외귀국 학생의 경우 서류제출 시 본교 입학관리부에서 이수학기에 대한 자격심사를 필해야 함
- 아. 해외귀국 학생의 경우 해외 학교 성적·재학증명서에는 재학학년 및 재학기간이 명시되어야 하고 아포스티유 인증 혹은 재외 공관에서 정규학교임을 입증하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함
- 자. 학력 인정이 되지 않은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의 학력은 인정하지 않음
- 차. 원서 및 제출서류는 본교 입학관리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함(접수시간 09:00 ~ 16:00)
- 카. 제출된 서류 및 입학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타. 모집공고 이후 추가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모집 인원내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파. 합격자 미등록 시 성적순위에 따라 충원함
- 하. 본 전형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전편입학전형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함



02713 서울시 성북구 서경로 116

www.daeil.or.kr

대표 02)940-1000 FAX 02-940-0626 입학홍보부 02)940-0800